

불편한 법령 이렇게 고쳐주세요!

- 불편한 법령 개선 위한 ‘국민 아이디어 공모제’ 결과 발표
- 22일, 최우수 1명, 우수 3명, 장려상 5명 선정 및 시상

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‘2023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’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.

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,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개월(4.1. ~ 6.30.)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. 총 1,17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, 서면심사와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, 우수상 3건, 장려상 5건 등 총 9건*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.

* 붙임: 우수 과제 9건 목록

최우수상은 이륜자동차에도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 임정식 씨가 받았다.

우수상은 재난문자방송 표준문구에 경보사유와 대피장소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김동현 씨,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구한민 씨,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쌍둥이 등 출산 시 직무대행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출산휴가 기간인 120일에 맞추어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김진호 씨가 각각 수상했다.

이완규 처장은 “올해 역대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되었는데, 그 중에서도 참신하고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제안을 주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”라면서 “국민 여러분이 제안해주신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법령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한편,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‘국민참여입법센터(opinion.lawmaking.go.kr)’를 운영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혁신해 나가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	책임자	과 장	배개나리	(044-200-6571)
		담당자	사무관	김덕원	(044-200-6574)



연번	수상내역	제안 내용
1	최우수상	○ 이륜자동차전면번호판 부착의무 및 정기검사 도입 - 이륜차의 경우 전면번호판이 없어서 신호·속도 위반 시 단속카메라로 단속이 어려우므로 전면번호판 부착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같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여 불법개조 등을 막는 등 국민안전에 도모할 필요
2	우수상	○ 재난경보문자 표준문안 구체화 - 「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」 별표 내 재난문자방송의 표준문안에 경보사유·대피장소·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표준문안을 개선할 필요
3		○ 교통체증 등 유발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-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교통체증과 보행자 위험을 발생시키나 현행 법령에는 도로점용허가 외에 별다른 규제가 없으므로,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등 조치를 할 필요
4		○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다태아 출산휴가 시 직무대행 기간 확대(90일→120일) -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까지 출산휴가 부여되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출산휴가 시 대리자 직무대행 기간이 일반 출산휴가 기간인 90일을 초과할 수 없어서 불편이 생기므로 이에 맞추어 120일로 확대할 필요
5	장려상	○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부(副)장애 표기 선택 도입 - 각종 복지혜택·세제혜택·취업 등의 증명서류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데, 여러 장애가 있는 경우 주(主)장애 표시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부(副)장애까지 일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
6		○ 「군인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중 "첩을 둔 사람" 표현 개선 -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전역을 할 수 있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 중 "첩을 둔 사람"을 포함하고 있는데, 오늘날 축첩제도는 사실상 사라져 부적절하므로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
7		○ 공동소유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요건 완화 - 압류·도난 등 자동차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멸실인정을 받은 경우라도 공동소유자 간에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지 못하면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미보유 차량에 대해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멸실인정을 받은 경우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 제안
8		○ 검정고시 응시자 사진 촬영 기한 완화(응시접수일 3개월→6개월) - 통상 증명사진 제출 시(수능시험, 각종 신분증 등)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을 요구하나 검정고시 응시자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에서 응시접수일 전 3개월 이내 찍은 사진으로 규정하여 불편하므로 이를 6개월로 확대할 필요
9		○ 이용·미용기구 중 타월·도포류 재사용 기준 완화 - 「이용·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」(복지부 고시)에서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세척·소독 후 재사용가능하나 타월, 도포류는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,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